

의안번호	제134호
의결 연월일	2011년 3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2월2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	-----

제출연월일 : 2011년 2월28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행정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지정과, 실·국·본부·단별 분장사무의 현실화 등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실·국·단간 분장사무 조정

- 생명산업 업무 : 경제통상국 → 바이오밸리추진단
- 정보통제 업무 : 균형건설국 → 행정국

② 실·국·본부 내 업무조정

- 정책관리실 : 직제순 업무 조정, 업무명 현실화 및 구체화
 -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 조정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
- 행 정 국 : 신규·이관업무 추가 및 직제순 업무 조정
 - 6.25전쟁 중 남북 피해 사실조사 업무, 정보통제 업무 등
- 경제통상국 : 신규업무 추가 및 직제순 업무 조정, 문구 수정
 - 신규 :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업무
 - 수정 : “재래시장” → “전통시장” 으로 수정 등
- 농 정 국 : 누락분 추가
 - 친환경농업 및 농업기반조성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여성환경국 (누락분 추가)
 -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균형건설국 : 소멸업무 삭제 및 신규업무 추가
 - 신규 :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 관리
 - 삭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업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행복중심복합도시 관련 업무, 정보통제 업무

○ **바이오밸리추진단** : 이관업무 추가

-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 용어 변경 (전염병 → 감염병)
- 산림환경연구소 : 누락업무 추가 (수목원 조성 및 운영관리)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정책반영 건의에 관한 사항
4. 의회 및 교육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6.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
7. 주요 국·도정 시책의 확인 및 평가
8. 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9.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
14.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
7. 주민등록·인감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8. 6.25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등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9.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5.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 관련 사항
6.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
8.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의 진흥·개발·육성 등에 관한 사항
12. IT·벤처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4.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5.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8.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반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8호로 하고,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한다.

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19호로 하고, 제20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균형발전·개발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4. 국토이용계획 · 관리
5.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 · 관리
19. 물류단지 지정 · 관리
20.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1.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 · 지도
22.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23. 토지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4.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사항
25. 토지정보의 조사 · 등록 · 관리 · 제공에 관한 사항
26.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7.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29.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육성
30.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2. 바이오밸리내 국책기관, 연구소, 대학 유치
3. 바이오메디컬 시설 유치 및 건립 지원
4.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5. 오송1,2생명과학단지 조성·지원
6. KTX 오송역세권 개발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바이오관련 R&D 사업 발굴 및 지원
9. 바이오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10.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바이오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13. 바이오 네트워크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호중 “전염병”을 “감염병”이라 한다.

제39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목원 조성 및 운영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국·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5.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7.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9.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0. ~ 11. (생략) 1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6조(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정책반영 건의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6.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7. 주요 국·도정 시책의 확인 및 평가 8. 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9.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0.~11. (현행과 같음) 12.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 14. 인터넷서비스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민원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5. 시·군 행정·인사운영,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국가기반 보호,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

현 행	개 정 안
7.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민간협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등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7. 주민등록·인감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8.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등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9.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입지 계획 개발 지원 조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의 진흥 개발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가스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5.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관련 사항 6.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산업입지 계획 개발 지원 조성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8. IT·벤처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12. 기업육성 및 자금 기술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력, 기업인 예우, 기업관련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14. 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5. 가스·연탄관리 및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16.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17.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 <신 설>	8. 기업육성 및 자금 기술 판매지원·기업인예우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의 진흥 개발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2. IT·벤처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4.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5.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8.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 진흥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 설> <신 설> 11. ~ 14. (생략)	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반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16.(중전의 제11호부터 제14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문화여성환경국) 문화여성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u><신 설></u> 4. ~ 6. (생략) 7. <u>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8. ~ 18. (생략)	제11조(문화여성환경국) 문화여성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현행과 같음) 4. <u>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5.~7.(중전의제5호부터제7호까지와 같음) 8. <u>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9.~19.(중전의제8호부터제18호까지와 같음)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u> 2. <u>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 <u>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4. <u>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5. <u>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u> 6. <u>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차이나월드 조성사업</u> 8.~16.(생략) 17. <u>물류시설단지 관리</u> 18.~19.(생략) 20. <u>경보통제에 관한 사항</u> 21. <u>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u>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지역균형발전·개발에 관한 사항</u> 2. <u>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u> 3. <u>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u> 4. <u>국토이용계획·관리</u> 5. <u>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6. <u>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u> 7. <u>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u> 8. <u>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u> 9. <u>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관리</u> <u><삭 제></u> 10.~18.(중전의제8호부터제16호까지로 한다.) 19. <u>물류단지 지정·관리</u> 20.~21.(중전의제18호부터제19호까지로 한다.) <u><삭 제></u> 22. <u>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u>

현 행	개 정 안
22.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조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3.~25.(생략)	23. 토지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4.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사항 25.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제공에 관한 사항 26.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7.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30.(중전의제23호부터제25호까지로 한다.)
제13조(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2.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오송 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2. 바이오밸리내 국책기관, 연구소, 대학 유치 3. 바이오메디컬 시설 유치 및 건립 지원 4.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5. 오송1,2생명과학단지 조성·지원 6. KTX 오송역세권 개발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산업 육상지원에 관한 사항 8. 바이오관련 R&D 사업 발굴 및 지원 9. 바이오 인프라 활용 산업학관 협력 지원 10.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바이오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13. 바이오 네트워크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급·만성 <u>전염병</u>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4. (생략)	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급·만성 <u>감염병</u>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4. (현행과 같음)
제39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8. (생략) <u><신 설></u> 9. ~ 11. (생략)	제39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 <u>9. 수목원 조성 및 운영 관리</u> 10.~12.(종전의제9호부터제11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